

에 보내진다. 대부분의 시설은 사실이며,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시설들을 모니터하고 일정 기준을 따르게 하고,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부분의 시설이 불법이며,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운영 방식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

협약의 기본원칙 3가지를 언급했는데, 아동의 의견과 견해를 청취되고 고려될 권리, 모든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권리가 여기서 배제돼 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달라.

혼외출생아동과 관련 호적등록 절차에 혼회출생아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지, 왜 혼외출생아동이 차별받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아동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거나 조언을 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가정,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해(이건 한국에서 새로운 현상이고) 비차별 원칙에 맞기 위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지 알고 싶다. 또한 교육서비스를 장애아동에게 확장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을 투여했는지 알고 싶다. 난민아동이 있는지, 한국 국적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국적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에 있어, 아버지의 뜻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을 검토하거나 혼외출생 아동의 권리 증진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외국인의 지위는 어떠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나?

여성과 직장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1987년 법, 성평등과 고용평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 무슨 조치가 취해졌는가?

성감별을 하려는 습관(에 대해 말하겠다), 원치않는 성을 가진 아동에 대한 낙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정도 자기 아이의 성을 알고자 하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의료적인 이유로 성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의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법(성감별 금지)을 따르는데 있어 사람들이 남녀간의 성평등의 필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 있느냐? 내 생각에는 부모의 성감별을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변화를 일으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견해에 대해(말하겠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옥설을 사용할 수 있다. 머리를 자르거나 검사할 수 있고 때론 속옷을 검사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준다. 사적인 통신이나 전화도 마찬가지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 증가 경향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회조사나 연구를 진행했느냐?

또한 위원회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음에 주목한다. 많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부모를 둔 아동이 양육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결정했어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 한편이나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의무에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 이혼 후 아동의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의 지원이 한부모 가정에 제공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아동 참여의 문제를 제기하겠다. 아동의 의견이 법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느냐?

아동의 이름, 재혼한 엄마와 사는 아동, 친아버지의 성을 유지하고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아동이 성을 바꾸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며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인지 관련법에 대해 알고 싶다.

관련된 사실에 따르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이 학교당국에 의해 처벌받는다. 한국정부는 학교가 아동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는 규칙이나 지침을 갖고 있느냐?

아동이 증언을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사안에서 아동이 증언을 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한편으론 생경한 일이며, 다른 한편으론 아동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아동의 증언이 수용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이런 문제에 민감한 시스템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성적학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시스템은 아동이 경찰에서의 증언에 부가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아동이 증인인 모든 영역에서,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문제에서 아동을 고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문화적 관행과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년소녀가장이 증가되고 있는데, 증가 이유와 정부의 지원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서면답변에서 제출된 통계에 문제가 있다.

◀ 통계의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해; 서면답변서의 4쪽, 표3.d에서 두 번째 칸은 milion이고 3번째 칸은 billion이다.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해; 호주제에 기초해있다. 호주제의 옹호자들은 이 제도가 전통과 보전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호주제의 역사가 일제시대 때 도입된 것이고, 역사가 매우 짧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과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내에서 여성부는 후자의 입장, 호주제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추가로 2001

년에 두 개의 지방법원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청했다. 민법조항의 합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호주제는 개정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헌법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성, 연령 등의 이유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혼외출생아동은 법적인 혼인에서 출생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추가로,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에 성·장애·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학벌에 따른 차별을 10대 국정과제에 놓고 종식시키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차별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다.

장애아동 교육; 초·중등교육은 의무적이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2001년 특수교육아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애학생의 비율은 3-17세의 9,957,000명의 학령기 아동 중에서 2.71%로 246,000명이다. 150,000명의 학생이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95,000명의 학생이 특수교육과 특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95,000명 중에서 51,000명이 특수교육시설에 있으며 30,000명이 일반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13,600 명의 학생이 집, 시설, 또는 병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3년에서 2007년 동안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수는 11개 795학급으로 증가될 것이고, 장애아동과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장애아동과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인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의 필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로 보건대, 한국 사회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자기 자녀가 장애아동과 같은 학교에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장애아동을 가진 가족은 숨기려든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 측면에서 취한 어떤 행동이 있느냐?

▶ 특히 장애를 가진 여아에 대한 차별에 대해 더 알고 싶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답하겠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해 답변하겠다. 초·중등학교법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학교장 또는 교육위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2002년 9월 현재,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수는 434명이다. 학교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간에 어떤 차별적인 구별도 없다. 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에 서투른 학생들에게 외국의 ESL 프로그램같은 한국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학교 밖의 환경에서도 외국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다.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외국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도전(challenge)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결혼하여 등록된 기간 내에서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기를 원하면, 그 자녀는 방문, 공동거주 비자를 갖고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의 출생을 등록하지 않는다. 미등록노동자의 자녀는 출생 때부터 자동적으로 미등록 거주가 되고, 그런 경우에 아동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법적으로 인정된 기간 내에 국적과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정부는 필요하다면 출생의 배경을 묻지 않고 아동에게 법적 체류를 허용한다.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얘기하겠다. 2002년 현재, 18세 미만인 탈북자 자녀는 275명이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 정부가 운영하는 탈북자시설로 보내진다. 거기서 2달 동안 적응교육을 받은 후에 일반학교에 간다. 아동의 연령과 북한에서 받은 교육배경에 따라 학교배정이 되며 수업료는 내지 않는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그들에 대한 어떤 법적 차별도 없다.

장애를 가진 여아에 대해서; 특별히 장애여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관련법과 장애관련법에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과 학대받은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보호센타와 지역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보고에 따르면 편의시설을 갖춘 비율은, 나는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52%, 중학교의 59%, 고등학교의 50%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성비;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 성비는 92년에 100(여):113.6(남)이었고, 2001년에 100:109로 줄어들었다. 첫째와 둘째 자녀의 성비는 각각 1: 5.4% 또는 1: 6.4%였고, 정상적 범위 내에서도 1 또는 3, 1 또는 7, 하지만 2001년 셋째자녀의 경우에 통계청에 따르면 141.4였다. 이러한 성비불균형은 가계승계의 우선권을 남아에게 주는 한국의 호주제 때문이며 남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여성부를 포함하여 관계 부처는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국가경쟁력 신장과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부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호주제의 폐지가 광범위화와 가족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얘기하겠다. 출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1.43으로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령사회화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아동양육 한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한국은 출산 동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시 차별문제로 돌아가서, 혼외출생아동에 대해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내가 한국 여성이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다. 등록처에 가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등록해달라. 이게 불가능한가? 간단한 질문 아닌가? 되느냐 안되느냐?

◀ 그렇다. 호주제하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설명했듯이, 아버지가 동의하면 혼외출생아동은 아버지의 성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다. 두 경우가 다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의해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 여아를 포함한 장애아동의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겠다. 온갖 종류의 정부의 행동과 조치가 취해지는 한편 '여론', 대중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는 분명

히 장애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장애아를 둔 부모는 그들의 아이를 숨기고 싶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고, 장애인이 아니라 소위 건강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지 않길 바란다. 왜냐하면 많은 비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에 자기 아이가 다니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문제, 가능한 많은 장애아동을 일반 학교에 통합하려는 교육 정책의 목표가 한국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정부가 통합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캠페인과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장애아동을 학교에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이다.

◀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 교육(특수교육이 아닌)에 대해 얘기하겠다. 일반학교에 다니고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는 장애학생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것이다. 2003년과 2004년에 특수교육 교사의 시험적 이행이 특수학급이 있는 3,100 학교와 136개 특수학교에 확대될 것이고, 2004년에 시작되는 우리 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사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학생을 일반교육에 통합하는 것이 장려되며, 그것이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다. 아마도, 의장께서는 오래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변화와 큰 차이가 있다. 요즈음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숨기려는 사람이나 부모가 많지 않다. 나는 단지 13,000명의 학생만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병원이나 시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특별한 보호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인연령의 차이; 민법에 따르면 남녀의 혼인가능최소연령이 남아18세 여아16세이다.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적 존엄성과 성평등에 기초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보여주는 바는 법적 최소연령과 실제 평균 혼인연령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2001년 현재, 첫 결혼의 경우 남성이 29.6세, 여성이 28.6세이다. 최소혼인연령의 차이를 줄이거나 폐지할 입장이 없다. 우리 대표단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했는데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 위원분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연령기준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16세로 낮출 것인가 18세로 높일 것인가? 조언을 구하고 싶다.

▶ 현실적으로 평균 결혼연령이 28, 29세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18세로 상향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문제가 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될 것이고, 한국에서 대부분 18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다면, 남녀 모두에게 18세를 최저연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월급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똑같은 월급을 받아야 만 한다면 높은 것을 취하는 게 맞다. 마찬가지다.

▶ 1차 보고서 때는 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생물학적, 정신적 성장의 차이를 언급했던 것 같다... 설명해 달라.

◀ 6년 전에 있었던 1차 보고서 때 있었던 답변에서는 남녀간의 성숙함의 차이를 언급했었다. 지금은 그런 종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에 이 부분을 고치는 것을 고려하겠다. 같은 나이로 하는 것을...

차별에 대해 많이 얘기했으니 평화의 문화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 얘기하겠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우리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취해진 중대한 조치를 목격했다. 지속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제7차 교육개혁은 이런 상황에 기반하여 아동에게 평화의 문화를 습득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했다. 이런 노력은 통일과 평화를 다루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확장에 기반한 계속적인 교육 개혁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이제 아동의 참여에 대해 얘기하겠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아동의 참여의 권리가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가정에서의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아동은 학교 학생회와 학급회를 결성할 것이 장려된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거기서 입학, 졸업, 학교예술제와 백일장과 같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한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의견을 말하고 청취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결사의 권리는 학생의 창조성과 흥미와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의 결성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치조직과 집단은 학교문화를 해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수단에 의해 적절히 지도된다.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 또는 담임교사에게 곧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 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 학생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제안은 학교운영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답하겠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가 조사를 하는데, 정부는 6세 미만의 아동과 중등학교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비를 면제해준다. 또 그들이 생계와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정부는 최고 1천5백만원의 복지 대부를 제공하고,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대체했다. 이는 모자가정이 아니라 부자가정도 보호하는 장치이며, 그 수혜가정의 수는 3만2천이며, 그중에서 2만7천이 모자가정이다.

미혼모 가정을 포함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이 될 것이다. 미혼모가정의 비율이 한국에서는 매우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미혼모와 그 자녀는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최고 3년까지 미혼모를 위한 센터에 머물 수 있다. 이것이 자녀가 있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며, 그들의 자립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미혼모 센터에는 각각 5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5 아이를 수용하며, 각각에게 매달 4십만원의 직업훈련비와 2십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세미만 아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말한다. 위탁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친인척으로 대체하거나 후견인 제도 확대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속하는 아동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해석이 있느냐?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을 수 있느냐? 왜 한국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는지에 대해 뭐라 설명할 수 있느냐? 아동에게 가족을 책임지게 하는 대신에 필요하다면 위탁보호 등을 할 다른 가능성은 있느냐? 우리는 아주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아동이 가장이 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는 어떤 (사회적)서비스도 없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발전된 나라도. 나는 아동에게 가족을 책임지게 한다는 데에 놀랐다. 뭐라 설명할 수 있는가?

◀ 현재 한국에는 13,000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있다. 그들 중에 절반은 위탁가정서비스로 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수는 줄고 있다.

▶ 나의 느낌은 이런 것이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부모가 일종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고아가 된 그 자녀들, 16살만 여자아이와 12살만 남자아이가 있다고 하자. 나머지 가족들, 그 확대가족은 뭘 하느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삼촌이나 숙모들은 어찌고 16, 12살난 아동이 가장이 되느냐. 왜 가족의 나머지 구성원이 책임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증가하느냐. 가족간에 유대가 부족한 것이냐?

◀ 그렇지 않다. 나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도 포함돼있다. 이 경우에도 이들 가족을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치고 있다. 위원께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아동과 함께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 둬야 한다는 것인가?

▶ 당신이 말한 의미라기보다는,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른 문제이다. 내가 언급했던 예의 아동이 모두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족지원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 물론이다.

▶ 알겠다.

◀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속하는 부모들은 전적으로 생계보조, 4인가족 당 최소 1백만원, 한 사람당 3십만원의 생계보조를 받는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가장은 전적으로 이러한 공적지원프로그램을 수혜받을 자격이 있다.

비시설화 경향에 대해 답하겠다. 지금 한국에서는 시설보호의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가정에 서의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이 시설수용돼왔으나 우리는 아동에게 최상의 것은 가능한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정부는 그룹홈, 위탁가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2000년부터 다수의 비인가 그룹홈을 공적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위탁가정에 매달 6,5000원을 제공해왔다. 위탁가정 보호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 외에 정부는 16개의 위탁가정지원센터를 올해 전국적으로 설립 할 것이다. 기존 시설과 앞으로 세워질 시설이 대규모 수용을 줄이고 소규모의 그룹을 지향함으로써 보다 가족적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 아동의 시설보호 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그 시설들에 약간의 돈을 준다고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설이 공립이 아닌 사설이라고 알고 있다. 사설과 공립 시설 들다가 있는데, 이들 시설은 정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돈을 받고 있다. 이들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정부 계획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시설이 법에 따른 아동 수용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법(비인가)으로 간주된다. 그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사가 없다.

◀ 이 문제에 관해 나는 견해가 다르다. 위원께서 언급한 아동보호 시설들을 사설기관이라 하셨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정부가 보조하고, 정부가 감독하고,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들 시설은 정부가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고 3년에 한번씩 감독하는 사회복지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정부도 이들 기관을 감독하고 있고, 그 운영비는 정부가 100% 보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들 모든 시설이 정부 운영 시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 위탁 가정에 관하여, 이들 가정이 매달 6만5천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위탁가정을 위한 훈련체계가 있느냐 또는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실제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느냐?

◀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동은 실제로 이미 공적부조의 수령자이며, 이 공적부조에 덧붙여 6만5천원이 추가로 위탁가정서비스에 제공되는 것이다.

▶ 위탁부모(수양부모)를 훈련하느냐? 위탁부모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체크하느냐?

◀ 실례한다. 이 문제는 너무 특수하다. 내 직원에게 물어보겠다.

▶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질문을 하겠다. 한국 정부 보고서 94항은 시설보호에 대해 비판적이다. 94항 문단 끝에 보면 “대안적인 양육 환경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 요보호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라고 하고 있다.

◀ 두 질문에 같이 대답하겠다. 위탁 가정 부모에 대한 훈련에 대해, 정부는 이들 위탁가정 부모들에게 어떤 훈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이런 종류의 훈련을 연례적으로 받고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 정부보고서 94항을 보면, 한국 정부는 알맞은 대안적인 양육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에 시설보호에 과중하게 치중해왔다. 그래서 대안적인 양육환경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위탁 양육과 대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 이것은 사실상 개인적 철학이고 아마도 내 정부의 철학일 것이라 여겨지는데 향후 10년 안에 한국인들이 어떤 아동시설(보육원)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설 설립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의 대안을 강력히 장려하고 있다. 시설보호는 과거에,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고아를 보살피기 위해 많이 세워야 했던 것이지만 현재는, 방임된 아이들이 많지 않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위탁양육에 보내진다. 아마도 10년 안에 아동 양육시설을 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하여는, 이를 시설과 인간 자원을 제도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는 2002년 12월 실종아동과 비인가 아동시설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 이를 시설은 2002년 5월부터 3개월마다 모니터된다.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모가 찾고 있는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청에서 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종아동찾기 센타에 보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아동의 수에 대한 답변; 언급된 숫자는 2001년에 시작된 아동학대예방센타에 보고된 105건의 사례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대표된 90건이며, 이 90건의 사례는 심각한 육체적·성적 학대와 관련된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타는 200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단일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로서, 정부는 이 센타를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일환으로서 여성부 산하에 성폭력 상담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학대예방센타를 만들었다. 2001년에 보고된 아동학대사례는 86이었고, 성폭력상담소에 보고된 대부분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성인에 의한 것이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에 대해 대답하겠다.

▶ 다른 문제로 가기 전에 이해가 안돼서 묻는다. 당신은 상담소와 아동학대 예방센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한 상담이, 아동예방센타가 사례를 접수하고 2,100건의 사례를 전달했고, 그리고 상담서비스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센타가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서비스냐? 왜냐하면 꽤 많은 수, 7-13세에 1,500, 14-18세에 10,000건이 상담서비스인데, 이건 무엇의 일부냐? 독립적인 서비스냐 아니면 기존 서비스의 일부냐? 정확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

◀ 사실, 점심 시간 동안에 이 두가지 통계의 큰 차이에 대해 얘기해봤다.

▶ 으음

◀ 죄송하다. 아 문제는 너무 기술적인 것이라 아마도 대표단 중의 한 명에게 대답하도록 해야겠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표 4의 b1에 제시된 통계는 사람, 피해자의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공된 상담 서비스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센타에서 여러차례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명료해졌는가?

▶ 상담서비스가 아동학대예방센타의 일부란 것인가?

◀ 그렇다

▶ 좋다. 내가 원했던 답이다.

◀ 성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답: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법에 따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아동의 개인 정보가 공개돼서는 안된다. 부모를 포함한 후견인은 조사과정에서 아동을 대리하여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녹음된 테이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포함된 것 말고도, 2000년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동의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였다. 아동용 제품과 상품의 안전 기준이 제기되었고,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안전교육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마다 연령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 정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20세 미만의 사람을 투표권이 없는 연소자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법 체계속의 다양한 아동에 대한 정의의 배경에는 목적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차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연령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지금대로 놔두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각 법은 그 고유의 의미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입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최상의 이익과 관련돼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대로 놔두기로 결정했다.

▶ 그건 문제를 일으킨다. 통계 문제를 부각시키고 싶다. 한국은 매우 다양한 범주를 갖고 있는데, 마지막 범주는 15-19세이다. 아동권리협약과 부합되지 않는다. 18-19세는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왜곡된 상을 전달하기 마련이다. 15-19세의 범주에는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8세 이상을 가려내야 하지만 그건 안돼고, 따라서 허구가 된다. 통계는 18세 이상을 포함하지 않고 18세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 그래야 연령대에 조화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청소년과 아동의 차이가 복잡하며,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 모든 연령차이를 조화시킬 것인지를 다시한번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매우 고맙다. 위원의 권고를 우리 정부에 가져가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토론하겠다.

사고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답: 한국의 주목할만한 발전은 예방보건 영역에서 선천성 질병

의 급격한 감소를 보았다. 대조적으로 자살이나 기타 사고와 관련된 아동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진전은 많지 않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5일, 정부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13개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무실이 의장을 맡아 국무총리의 지도로 조직하고 작동한다. 매년 초에 이 협의회는 다음해의 포괄적 계획을 위해 추진 중인 '아동보호·육성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5개년의 아동 보호와 육성계획 속의 48개의 조치들은 아동권리의 강화, 아동보건과 복지의 향상,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의 안전,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 속에 포함된 조치들 중에는 아동권리지표의 개발, 특수교육의 확대, 학교운영자에 대한 건강 검진 등이 있다.

가정에 홀로 있는 아동(Home alone child)에 대하여; 여성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함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의 수가 증가해왔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취학 전 및 방과 후 시설, 공공 아동보호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2002년에 약 717,000 명의 아동이 약 20,000개의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았고, 그중에서 20%가 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8,000,300 유치원이 있고, 정부는 학령전 아동에게 일년간의 아동교육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내가 이해한 바로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사설이다. 따라서 부모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아동보호센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돈을 내야만 하는가? 그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부처가, 즉 유치원은 교육부가 보육센타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데 누가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가? 보육서비스의 질, 유아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최소 기준이 있느냐?

◀ 내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에 대해 좀 알고 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대표단 중의 한 명이 대답하도록 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정부가 보육료를 보조한다. 특히 5세의 학령기 이전 아동들은 내가 언급했듯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둘다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보조된다. 장애아동의 보육료 또한 정부가 보조한다. 유치원은 감독을 받고 교육부에 책임이 있으며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지도한다. 보육의 질(the quality control)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최소 기준을 개발했고 준수되고 있다. 그리고 원장과 교사들에 대한 연례적인 훈련이 있다.

한국에는 유치원에 두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설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종류이고, 자녀를 이 두 종류의 유치원에 보낸다면 부모가 지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유치원 교육료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 재정적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는 2002년에 47,736명이었고, 이러한 재정지원프로그램에 소요된 정부예산은 2002년 3백6십6억원이었다. 이건 대략 12.06..., 미 달러로 계산해야만 하는데 미안하다. 한국 원화로 말하겠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3백6십6억원, 2001년에는 1백2십억6천만원이었다.

▶ 좀더 분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겠느냐? 한국에는 사립유치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

원이 있다고 했다. 만약 내가 가난한 저소득 가정이고 내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낸다면 내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공립유치원에 보낸 경우에만 보조 받는 것인가?

◀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 당신이 저소득가정에 속한다면 당신에겐 자격이 없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사립시설이 아니라 공립 시설에 갈 자격이 있다. 그 경우라면, 공립 시설에 간다면 정부가 일정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계속해라.

◀ 준비된 서류는 다됐다. 내가 답변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더 있다면 상기시켜 주시면 고맙겠다.

▶ 2002년 7월에 만들어졌다는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는 살 권리(right to alive)를 제기했다. 사고, 교통사고 및 기타의 사고, 정부보고서 14쪽 표2에 보면, 아동 사망원인의 등급이 있는데, 안됐지만 너무 오래된 통계, 1997년?, 어쨌든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정부는 교통사고와 여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 또는 캠페인을 갖고 있느냐? 교통사고 및 기타의 사고를 어떻게 예방해야하는지에 대해 학부모와 아동을 교육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 한국정부의 서면답변 7에서 추가로 더많은 숫자를 보여줬는데, 사망원인에서 사고가 매우 높은 퍼센트이다.

▶ 가족과 관련해 여전히 질문이 있다. 호적이 오직 아버지의 성만을 갖고 있는데, 이혼한 부모의 자녀의 경우에 아예 호적이 없는 것인가 모계,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는 것인가, 호적에 대해 설명해달라.

◀ 사망원인에 대한 답변: 장애 예방에 대해 정부가 취한 노력,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를 예방하지 위해 취했던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자동차 앞좌석에 12세 미만의 아동을 앉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안전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올해 시작되는 제2차 장애인을 위한 국가계획은, 내가 알기로는, 장애예방이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초기 발견, 조기 예방이 이 국가계획의 주요 카테고리이다. 나는 이것이 대답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가정의 자녀의 성문제에 대해 대답하겠다....지연해서 미안하다..., 민법의 개정안이 2000년 정부에 의해 제출되었는데 이혼한 어머니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갖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혼한 어머니는 양부의 성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와 다른 성을 갖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여성부는 다양한 여성 조직, 민간단체와 협력속에 현재 호주제의 비합리적인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중의 공감 세워왔다. 여전히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머물고 있다.

▶ 알겠다. 자, 내가 이혼한 엄마를 둔 아이다. 엄마는 결혼할 것이고 나는 그 남자를 싫어한다. 나는 그 사람의 성을 갖기 싫다. 그러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자녀가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나는 계부의 성이 싫다. 나는 원래 아빠 성을 갖고 있는게 좋다.

◀ 법무부가 답변할 것이다.

▶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건 다른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의 생부와 생모가 결혼하고 이혼했다. 혼인 시에 당신은 아버지의 성을 갖고 있었다. 엄마가 재혼하고, 엄마와 계부가 차 한잔을 들고 와서 앉아 '아들아, 들어봐라. 우리는 네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 나라에서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그 아이가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동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나는 성을 바꾸기 싫다. 나는 생부의 성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 나중에 답변해도 될까요? 우리끼리 토론해도 될까요?

▶ 좋다

◀ 고맙다

▶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답변해라)

◀ 물론이다. 그 전에(답변하겠다)

▶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어떻게 보증하느냐? 아주 많은 경우에,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정정도의 돈을 매달 줘야 하는데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60%이상이 그들이 응당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정보가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그런 어머니들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느냐?

▶ 나는 또한 미혼모이다. 정부는 아버지를 찾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느냐? 이를 위한 절차가 있느냐?

◀ 아동양육비에 관해 가족법이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의해 양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들을 구금하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 그건 충분치 않게 들린다. 얼마나 효과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서 몇 명의 남자가 감옥에 있을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여성의 63%인데, 그럼 당신

이 하는 말대로라면 만 명의 여성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다른 만 명의 남성이 감옥에 있다는 것인가? 양육비를 내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우스운 종류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 아동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를 구금하는 관행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나는 그런 해결책이 정말로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어쨌든 아동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아니다.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령, 아버지가 정기적인 급료를 받는다면 그 고용주가 체계적으로 그의 급료에서 아동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 감옥에 가두는 것은 또한 비용이 많이 듈다. 국가가 그 남성을 위해 밥값과 주거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아동양육비 공제에 찬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고용되면 그 고용주는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월급에서 공제하여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 문제에 관해, 실제로 우리 대표단에서 토론을 했는데, 소위 소송 장벽이 한국에서는 너무 높아서, 보통 사람들이 해결책을 구하려 법원을 잘 찾지 않는다. 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편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는 얘기하지 못했다. 장래에, 이 회의 후에,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하신다면, 장차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 좋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질문 중의 하나를 생각중이다. 성을 바꾸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최종 질문을 한차례 더 해야 한다. 교육, 보건에 관해 이미 많은 질문이 제기되어 있고, 특별보호조치, 소년사법, 상업적인 성착취 등이 남아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위해 플로어를 열겠으나 매우 짧게 해야만 한다. 시간이 모자란다.

▶ 교육비 지출이 매우 매우 낮다. 두가지 추가적인 문제는 하나는 초등교육에 관한 것 이고 가족의 추가지출이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교재, 교육 자료 등에 많은 돈이 든다. 이것을 무상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등교육의 대부분은 사립학

교이다. 한국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시험에 통과할 목적에 기반해 있다 보건 시스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은 또다시 한국의 보건비이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에 있어 가난한 가족과 부유한 가족에 별반 차이가 없으며 어떤 경우건 일반적인 의료체계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소년사법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이 14세에 시작되는데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일종의 보조 시스템이다. 둘 중 어느 하나로 가느냐는 검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법원도 아니고 아동의 상태에 따른 것도 아닌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설명해줬으면 한다.

취학전 교육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얘기를 더하고 싶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기의 발

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그렇다면, 왜 유치원 교육과 보육 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이 교육 예산의 1%에 불과하나? 한국 정부는 '기준'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유치원 교육과 보육의 질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떻게 모니터하고 있느냐? 한국 보육 교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또한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 보육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기 보다는 사적서비스여서 대다수 사람들, 부모와 학생들에게 차별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 탈락률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중·고등학교에서 탈락률이 높은데 학교 탈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학교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교육개혁에 대해 들었는데, 교육개혁이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의 하중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방법을 지배하고 있다. 알다시피 모두가 학원에 가야하고, 보충수업을 해야하고, 한국의 아동은 가능한한 최고의 학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과외와 학원비를 지불해야만 하고, 그것은 부모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숨겨진 교육비 지출이다.

아동매춘과 인신매매에 관한 질문이다. 한국 정부는 1996년에 열린 스톡홀름 세계회의와 작년에 요코하마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했느냐? 참가했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종류의 국가행동계획이 도출됐는지 아니면 한국정부가 한국에서 매매준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는지 알고 싶다. 특히 알고 싶은 것은 인신매매와 매매준에 관한 한국의 법이 그것을 불법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기구가 감시하고 있는지, 인신매매됐거나 매매준에 종사한 바 있는 아동을 위한 재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 원조교체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이다.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관련된 청소년들뿐 아니라 그 보호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족계획에 대해 알고 싶다. 성교육이 학교에서 제공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모유수유와 관련하여, 모유수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유수유에 관한 규범이 한국에는 없느냐? 병원을 포함하여 모유가 분유로 빈번히 대체되는 것으로 봐선 모유수유에 관한 규범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아동친화적인 병원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2000년에 65%의 어머니가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수유했는데, 완전한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전문가가 모유수유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

경제적으로 착취받으면서 노동하는 아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대, 임금체불 등의 사례는 어떠한가? 점차 더 많은 수의 아동이 식당, 배달, 가게나 거리에서 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동의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성취할 수 있고, 성인기를 향하여 아동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무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

한국정부대표단의 의장이 도입부에서 2002년에 시작된 7차교육개혁에 대해 얘기했다. "7차 교육개혁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의 양을 획득할 다양한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나는 이 교육개혁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다. 앞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교육 시스템이 무엇이냐? 학급 당 학생의 수를 35명으로 줄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개혁의 일부냐 아니면 이미 성취된 것이냐? 한국 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새로운 학교와 교실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냐? 교육세를 통해서인가? 교육세는 누진세인가 일률과세인가? 교육세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소득이전이 되고 있는가? 또한 공립학교에서의 학급 당 학생수와 사립학교에서의 학급 당 학생수에 대해 알고 싶다.

한국은 난민아동에게 교육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난민아동에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는 여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의 2/3가 남성이 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또한 협약 29조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 아동인격의 개발과 존중,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적분쟁상의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아동을 형사절차 혹은 보호절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보호절차에 처한 아동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알고 싶다.

한국에서의 징병연령에 대해 분명하게 해줬으면 한다. 나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얻었다. 1차 보고서에서는 17세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한가? 동시에 한국정부는 징병이 18세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17세에 자원입대가 가능하다면 협약의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부응하여 입대가 정말로 자발적임을 보증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느냐?

7차 교육개혁에 관하여 질문이 있다. 한국정부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고 경쟁의 완화를 원한다고 했다. 그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을 치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경쟁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것은 한국 정부의 전국교육정보시스템(NEIS)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교육부가 가계 월소득, 개인적인 가계의 역사, 정치·사회단체의 회원여부에 대해 알아야 하느냐? 왜 교사들이 교육부에 이런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 내가 무슨 정치 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교육부가 알아야 할 연관성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가르침(teaching)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해줬으면 한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의 문제에 관한 정보,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2001년 5월에 심사를 받았는데 위원회의 결론적 의견 중에서 보면, 보건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1%이거나 1% 미만이고, 줄어들고 있다. 매우 낮은 재정 시스템의 영향으로 전체 보건의 90%가 공적부문이 아니라 사적부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알고 싶다.

◀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동료들의 의견을 구하겠다.
보건 문제에 관하여는 내 자신이 답변하겠다. 정부는 공적 부문을 5년 이내에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적 부문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건예산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 왜냐하면 나의 이전 직책이 그런 종류의 보건예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기로는, 정부의 보건 예산은 5조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60%가 의료보험, 공공의료보험과 의료보호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아마도 공적 보건 지출과 관련된 어떤 문서들은 공적 보건 지출만을 포함하는데,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와 관련된 예산이 아주 크다.

에이즈에 관해서는, 그렇다, 에이즈는 한국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돼가고 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제동이 걸려야 할 문제이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로 지켜지고 있고, 한국도 에이즈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성교육, 모유수유, 아동친화적인 병원에 대해서는 동료인 안박사가 답변할 것이다.

병원에서의 출산이 거의 100%에 도달한 반면 모유 수유는 매년 줄어들어 현재 10%이다. 매우 낮다. 정부는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에 착수했지만 모유수유율은 매우 낮다. 20년 전에는 거의 50%였는데 낮아졌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아동친화적인 병원 계획을 세웠고 유니세프와 한국가족보건및복지연합 등과 민간단체들과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

법적 보호에 관해서는 동료인 민 검사가 답변할 것이다.

대답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현행법하에서의 아동의 성에 관련해서 이혼한 어머니의 자녀는 양부의 성을 가질 수 없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아동은 양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법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아동이 양부의 성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이전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동의 성과 관련해, 아동이 아버지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때때로 창피한 일이다. 한국인들이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일종의 문화적 선입견이다. 고맙다.

연소자 고용에 관하여, 노동부의 동료가 답변할 것이다.

한가지 핵심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하겠다. 15세와 17세 사이 연령의 노동자는 뜻으로 연소 노동자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기본적으로 연소 노동자는 법과 규칙에 의해 보호받는다. 한

국은 연소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연소자의 경우 하루 7시간 노동을, 성인에게는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규칙에 기반하여 46개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 감독관이 연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 감독과 지역노동사무소의 보고서 검토 등 갖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소 노동자를 위한 특별창구가 있어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연소 노동자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노동감독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002년에 노동감독관들은 524개 업소를 감독하여 369건의 연소자 권리 침해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성착취와 관련해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정확한 %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 우려할 정도로 높다는 것에 동의한다. 2000년 7월의 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따라 성을 산 자는 최고 3년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상이 공개된다. 관련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보다는 사회적 서비스가 지원된다. 2002년에 정부는 9개의 청소년 쉼터를 지원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교육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내가 일부를 대답하겠다고 내 동료가 더 대답할 것이다. 첫째, 아동의 여가활동에 관해 교육부는 새 교과과정, 7차 교과 개혁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30%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다. 초기 영어 교육의 과열과 사설학원에 대해 우려하며 아동의 학습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한국청소년상담위원회와 함께 초기 영어교육의 부작용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과 교육 지침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부모들을 교육해왔다. 주 5일 근무제와 그와 따른 주5일 수업시스템이 실행되면 아동의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학교탈락에 관해, 약 7만명, 4.5%의 중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이를 학교탈락이나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 1998년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학교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대안학교들은 아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3학년 전국 시험은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평가는 단지 기본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평가 결과는 전체 학교나 학생의 순위를 매기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교육과 학습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이 평가는 학생의 발전을 전혀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입학시험의 경쟁을 경감시킬 방도에 관해서는, 한국 학생이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적과 수단은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공부의 심각한 압박과 경쟁을 경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재능과 흥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체계를 재구성해왔다. 초·중등학교의 커리큘럼도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넓은 범주의 교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적인 커리큘럼으로 변해왔다. 지금은 학교 수업일이 220일이 넘지만 주5일 근무제에 이어 주5일 수업제가 이뤄지면 따라서 학교 수업일도 줄어들 것이다.

한국정부가 난민아동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부모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는 난민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위원

중 한분이 교육개혁프로그램의 엄청난 재정을 어떻게 감당 하냐고 했는데, 그것은 교육세만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도 뒷받침된다. 교육세는 균일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개혁프로그램의 기금은 교육세와 정부예산에서 나온다. 또한 무상의 학령기 이전 교육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며 많은 재정적 지원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립유치원은 무상이 아니며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또 다른 질문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대해서 나는 두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는 더 많은 시설에 더 좋은 선생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에서 좋은 공립학교들이 있다.

현재 무상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은 무상 중등교육이 벽지에서만 제공된다. 한국정부는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내년에 확대될 것이다.

군복무, 아동을 위한 변호인과 징병연령에 관해서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연소자를 위해 법률 보조인을 지명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에서는 한국 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군복무시키지 않는다.

또한 이혼율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년 330쌍이 결혼하고, 150쌍이 이혼한다. 이는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혼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며 결혼은 매년 이뤄진다. 그래서 매년 3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것에는 오해가 있다. 이 오해를 수정하고 싶다.

▶ 하지만 관련된 질문은 이혼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무슨 조치가 있는지, 아동이 어디로 가는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동이 가족에게로 가는지에 대해 특별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 검사의 답변에 대해 묻겠다. 기소된 아동에게 법률보조인이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질문은 검사가 형사처분을 하느냐 보호처분을 하느냐에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기소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에게는 변호인이 없다는 점이다. 보호처분을 받는 아동에게는 변호인이 없고 형사처분을 받는 아동에게는 변호인이 있느냐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형사처분이냐 보호처분이냐를 결정하는 재량이 검사에게 완전히 자유재량으로 맡겨져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이다.

덧붙이고 싶은 문제가 있다. 많은 경우에 변호인을 지명하는 결정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한 어떻게 변호인을 지명하느냐이다.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요량으로 이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법률 보조를 제공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검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인가? 수사단계에서 아동 지원의 문제가 있다. 경찰서에서 아동에게 자백을 끌어내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아동이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보호처분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아동은 그 자유가 박탈되는 시설에 보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소위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표

현의 문제일 뿐이다.

언제 어느 경우에 검사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명하는가?

◀ 민 검사 답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이 보호법원(protection court)에 가느냐 검사법원사에 달려있다. 아동이 보호법원이냐 다른 법원에 가느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지침이 있다. 아주 간단한 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있다.

대표단의 다른 일원: 내가 보충답변하고 싶다. 실제로 답변에 실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소를 결정하는 첫 번째 사람은 검사이며, 아동이 형사법원에 가고 난 후에 형사법원이 또다시 그 아동을 가정법원에 보낸다. 그래서 이는 검사의 결정이 아니다.

민검사: 맞다. 나는 원칙적으로 단어를 사용했다.

▶ 원칙적으로? 어쨌든 질문은 형사법원에서는 아동에게 변호인이 제공되지만, 아동이 형사법원에 가기 전에도 변호인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죄원에 보내지기 전인지,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질문이다.

◀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은 대답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 장차 대답할 수 있기를 희망 한다.

높은 이혼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한국은 이혼만이 아니라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은 노령인구가 8%인데, 16년 내에 44%, 노제동을 걸기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대답이 됐나요?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보처로서 구실하고 있다.

예, 대답을 다한 것 같은데요.

▶ 의장: 끝난 것 같군요.

오늘 회의를 끝내기 전에 한국담당 보고관인 위원의 결론적 의견을 들어보고 한국정부 대표단의 마지막 발언을 듣겠다.

▶ 오늘 회의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2차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2년간 새로운 법, 기구의 설치와 제도도입 등이 있었다.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1차 보고서에 대해 했었던 권고를 한국 정부는 심각하게 재고려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권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협력에 감사드린다.

◀ 감사한다. 위원들의 귀중한 지적과 의견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대화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회와 위원회의 의견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정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 먼길을 와줘서 감사한다. 한국이 옆집도 아닌데, 전문성을 가진 대표단을 보내줘서 고맙고 돌아가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라며, 전통적 태도 특히 체벌, 입양, 혼외출생 아동, 호주제 등에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알다시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 캠페인 같은, 오늘과 내일의 아동을 위해 협약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바란다. 지금은 방만할 때가 아니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친다. <끝>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1 Avenue de l'Ariana, 1202 Genève

Opening Remarks by Mr. MOON Kyung-tae,
Deput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1. Introduction

Mr. Chairperson and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Committee,

I am profoundly pleas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Second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sideration by this Committee, which was submitted in May 200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report is the result of over five years of concerted effort along with numerous consultations among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regarding this issue.

Taking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ir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hild rights. Their assistance has been immensely valuable in that it has been an impetus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nitiatives, offered constructive criticism while providing support in areas where government efforts alone would have been insufficient.

2. The Structure of the Second Report

Mr. Chairperson,

The Second Report and the written responses were structured in such a way as to present details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made in the Republic of Korea as they correspond to the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the concluding observation;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end of the initial review in 1996.

In this introductory statement, I would like to outlin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of Korea in recent years. As policies and legislative efforts reflect the reality of the times, the measures and actions described in the report and our discussion can be more easily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such conditions.

I would like to then offer you a snapshot of our efforts taken to enhance child rights in Korea subsequent to the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highlighting some of the key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and actions taken.

3.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Mr. Chair,

As you know, the Republic of Korea, alongside many other Asian countries, was struck by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reality, it was the result of several decades of financial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that had come to characterize much of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the country.

Thu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Kim Dae-jung embarked upon a program of bold reforms to restructure the national economy and to strengthen democratic values and market practices. These reforms were enac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IMF as part of the rescue loan terms.

With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se reforms in the corporate, financial, public and labor sectors, a considerable number of workers were laid off. This added to the already swollen unemployment numbers which resulted from the economic contraction triggered by the financial crisis. The sudden loss of employment caused family dissolution and increased the number of disadvantaged children living in vulnerable environments.

Even though resources were limited,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do its utmost to minimize the pain of its people. By way of example, efforts such as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were undertaken with the aim of mobilizing as much as possible to help those, including children, who have been hurt the most by the reforms.

Korea is a country divided. The two Koreas, having fought a war against each other in the early 1950s, have been living in distrust and enmity for the past half-century.

In an effort to turn the course of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first South-North Korean summit was held in 2000 as a result of consistent and patient efforts on the part of our government. The inter-Korean summit was followed by an activa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in various fields.

We hope steps towa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continue so that the day will come when we enjoy a lasting peace. We know that we can only achieve this goal if we are prepared to safeguard our country. We must maintain a solid security stance, and therefore defense expenditures will continue to take up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Mr. Chairperson,

The Republic of Korea elected our next president this past December. Only one month away from his inauguration, we are at an important juncture. The newly established transition committee will assess those steps which have been taken by the outgoing administration and, based on that assessment, prioritize future policy tasks.

As you may be well aware, President Kim Dae-jung, a Nobel Laureate in Peace, is well-known for his lifelong devotion to Korea's democratization. Also, with the new leadership of Mr. Roh, a former human rights attorney who is no less concerned than his

predecessor in promoting child rights, Korea will be able to come ever closer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CRC. This goal has been clearly manifested as the President Elect has pledged to make national efforts to fight against, and put an end to, discrimination associated with gender, foreign laborers, disabled people, non-regular workers, and educational background.

4. Development Since the Initial Repor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During the past 5 years, a number of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 rights.

As explained in the written response, the Child Welfare Act underwent a sweeping overhaul in 2000. The newly amended Act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 priority which promotes and safeguards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reflect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troducing the issue of child abuse into the Act has been another important improvement.

In 1997, the Government promulgated the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998. This Act serves not only to punish offenders, but also to separate and deal with violence against children. Likewise, i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erious impact of repeated and chronic domestic violence on the formation of the child's personality.

The Act on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enacted and came into force in February 2000.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guarantee children under the age of nineteen human rights and help them grow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by protecting them from sexual exploit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2001 with the aim of covering a diverse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the promotion of child right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Commission has made substantial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child righ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as established in 2000 as the focal point within the Government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prevention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re within the mandate of the Ministry.

Formulated in 2002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Rearing consists of 48 measures in five areas for children protection and rearing. These consist of the enhancement of children's rights, improvement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strengthening of children's safety, protection of children from harmful environments and support for the sound rearing of children.

Civil Rights

Since the submission of the initial report, the Civil Act along with the Nationality Act were revised in line with the articles of the Convention regarding the right to name and nationality.

Concerning the registration and the surname of a child with a foreign father and Korean mother, the Civil Act was revised in December 1997, including the new clause "a child whose father is a foreigner shall take the mother's surname and lineage and be enrolled in the mother's registry"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both the patriarchal and matriarchal lineages by revising the article of Nationality Act in December 1997. This states that a child born with either a Korean father or a Korean mother can acquire Korean nationality.

Also, under the newly revised Nationality Act in December 1997, an exception regulation was made to allow a child to retain dual nationality until reaching the age of 18.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In the last national economic crisis period, the number of children experiencing the loss of a family environment increased greatly due to a dismissal of their parents from the workplace and the subsequent family dissolu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provided measures to protect these disadvantaged children.

Perhaps the most important measure was an expansion in the number of recipients of livelihood assistance benefits, among whom 25% were children. At the same time, meal services were publicly delivered to malnourished children at schools and welfare institutions. The school lunch program,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1992, expanded to cover all elementary schools from 1998, and further expanded to high schools in 2001.

As for arrangements for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care has been provided in residential institutions. The mayor, provincial governor and ward head are responsible for the regular inspection of these childcare institutions. In addition, from 2000 an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by which almost every aspect such as manpower, finance, management, programming etc., is evaluated every three years.

As an alternative to institutional care, government and NGOs have encouraged foster care by providing care expenses and training to foster parents. Although foster family care is still uncommon, the government and NGOs continue to make great efforts towards its expansion. From 2003, 16 foster family support centers are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relative foster care has been promoted to a great extent.

In an effort to change the primary form of welfare institutions from dormitory homes to small groups, the government took the lead in a pilot group home project. As of 2001, there were 32 group homes in operation.

Basic Health and Welfare

The principal aim of child health care is to reduce mortality, morbidity and disability in children by providing free pre/postnatal care. Health supervision involves regular health checks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6. Formerly available only for low-income families, mass-screening for metabolism has been expanded to all newborns starting in 1997.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maternity and the child, maternity leave was lengthened from 60 days to 90 days in 2001 by revi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Temporary Leave Benefits for Childcare, which the Government pays to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temporary leave for childcare, was also introduced in 2001.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Youth Protection Act to protect young people from harmful environments.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utilize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ssisting young people victimized by drug abuse.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 comprehensive welfare plan integrating welfare, employment and special education was initiated by the Committee on Welfare for the Disabled under the President in 1996. The first Five 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was completed in 2002. A second Five Year Plan began from 2003. From 2003 free of charge early child care services are to be initiated.

According to the newly amended Child Welfare Act,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ere established in 2001. At present, one National Center and seventeen local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re in operation. The operation of a 24-hour telephone hotline for reporting child abuse is one of their major responsibilities. These centers investigate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including visits and supplying of remedial services to th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child abuse.

Education

In the last few years educational authorities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disadvantaged children.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more capable of fostering the creative human resources required by our global knowledge-bas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reduced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to 35 from 2002. To achieve this goal 12.36 trillion won will be invested from 2001 to 2004 to build 1,202 new schools and 12,304 classrooms.

Further to these goals, the 7th Education Reform began in 2002. It offers students a variety of opportunities to acquire the optimal amount of education. The scope and level of learning has also undergone readjustment.

The project of expansion of free middle school education to urban areas is being implemented. By 2004, all middle school students will benefit from free education.

Early Education and Care Support for 5-year old children belonging to low-income families will be expanded to provide a basis fo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in the early childhood stages. This will also serve to support women's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Special Protection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endeavored to take steps to protect juvenile workers and other vulnerable children in terms of their welfare and rights.

Following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 on minimum age in 1999, the government revised The Labor Standards Act to increase the minimum age of labor from 13 to 15 in March, 1997. This provided a solu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mpulsory education age and the minimum age of labor set forth in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has also taken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Protection of Youth from Sexual Exploitation, offenders of sex crimes that involve youth, such as paying for sex with youth; mediation of sex with youth; the selling, buying,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may be punished. In addition,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is authorized to disclose to the public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ose who have committed crimes under the Act and have been sentenced by courts.

Conclusion

Mr. Chair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at there is much more work to be done in protecting and promoting child rights. We hope that this forum will provide great opportunities to enhance the level of child rights by providing constructive comments and criticism.

I will be pleased to answe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y questions you may have.

Thank you.

2003년 1월

(전문번역: 인권운동사랑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2차 회기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사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2000년 5월 1일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A. 도입

2.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2차보고서 제출과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CRC/C/Q/REP/KO/2)에 대한 자세한 서면답변의 제출을 환영한다.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단을 파견해 준 것에 주목하며, 심사 회의 동안에 있었던 제안과 권고에 대해 한국 정부대표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B.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와 발전

3.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해진 입법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1997년의 가정폭력처벌 특별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에 착수하고 있으며, 2000년의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아동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취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4. 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조약과 182호 조약을 각각 1999년과 2001년에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고용최소연령을 15세로 상향조정한 것을 환영한다.

C. 협약 이행의 장애 요인과 어려움

6. 위원회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IMF 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경

제 · 사회 · 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 재정적 제약을 받았음을 인정한다. 또한 엄격한 긴축 정책으로 국제 부채를 제시기에 갚을 수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었음에 주목한다.

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협약 4조, 42조, 44조 6항)

위원회의 1차 권고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1차 정부보고서(CRC/C/8/Add.21)를 심사한 후 위원회가 채택했던 최종 견해 속에 담겼던 대부분의 권고가 불충분하게 수행된 것을 유감으로 여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리하다:

- a) 유보의 철회(권고 19)
- b) 여아, 장애아,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균절을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의 개발(권고 20)
- c)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권고 26)
- d)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22항)
- e) 협약 29조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재고할 것(29항)

8. 위원회는 위와 같은 권고를 재반복한다.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겼으나 이행되지 않았던 권고들과 이번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유보

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협약 9조3항, 21조 a항, 40조 2-b-v항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10. 위원회는 유죄를 선고받은 청소년의 항고권에 유념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협약 40조 2-b-v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1993년)에 부응하여 협약 21조 a항과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상호면접권을 보장하게끔 민법을 신속 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입법

11. 위원회는 그간 취해온 국내법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완전히 부응하지 않는 국내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국내법이 조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조정

13. 위원회는 1998-2002년 제 8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에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이 포함되었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 기구가 없음을 여전히 우려한다.

14. 위원회는 2001년에 세워진 '아동보호와 아동 양육을 위한 종합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관련 유엔 특별 총회(2002년 5월)와 "아동 위원회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 기구를 구성하고, 그 기구가 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15. 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가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정부 내에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1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언급한대로 모니터링 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7. 위원회는 앞에서(5번) 주목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18.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 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여 다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국가인권위 위원 중에 적어도 한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또는 대안적으로 국가인권 위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 b) 아동이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 · 조사 · 검토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에 대한 인식향상을 통해 국가인권위에 대한 아동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 친화적인 방식에 유념하라.

자원의 할당

19. 위원회는 지난 2년 간의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래로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할당된 예산이, 특히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현재의 지출 수준은 아동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한국과 비슷한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예산과는 같은 규모가 아니다.

20.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약 4조의 충분한 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일 것을 권고한다.

a) 아동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두라.

b) 공적·사적 부문 및 민간단체 영역에서 아동에게 소요되는 정부 예산의 양과 비율을 확인하라. 이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비용, 접근가능성 및 질과 효과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부문에서 지출의 영향과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료 수집

2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서면답변에서 표현했듯이 현재의 자료수집 체계가 협약의 모든 영역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에 견해를 같이하며, 아동권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주목한다.

22. 위원회는 분산된 자료의 수집, 특히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 자료와 지표를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 평가를 위해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 이행 관련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권리 지표작업을 완수할 것을 장려한다.

시민사회와의 협력

23.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에 주목한다. 동시에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준설정이 없고, 정책수립 단계 또는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한다.

24.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동반자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이며 공동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포함하여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나 협력할 것을 권고하며 장래에 국가보고서를 기초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권 이행에 있어 사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2002 총토론의 날’에 제기된 권고(CRC/C/121)를 고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개선할 것을,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인증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홍보

25. 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뿐 아니라 광범위한 아동과 대중이 협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고, 협약에 담긴 아동권에 기초한 접근이 불충분함을 우려한다.

26.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민간단체와 국제 기구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협약이행사항에 관한 정부보고서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이 협약 42조와 44조에 따른 정부의 의무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a) 일반대중과 특별히 아동을 겨냥하여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에 착수하라.

b) 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공무원, 지자체 종사자, 아동 구금 시설 종사자, 심리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사회사업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라.

2. 아동의 정의 (협약 1조)

27. 위원회는 남아(18세)와 여아(16세)간의 최저혼인연령의 차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28. 위원회는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하라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3. 일반 원칙 (협약 2, 3, 6, 12조)

29. 위원회는 협약에 규정된 일반원칙, 차별받지 않을 권리(2조), 아동이익최상의 원칙(3조), 생명·생존 및 발전의 권리(6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12조)가 한국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한다.

30.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a)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서 협약의 일반원칙을 반영하라.
b) 협약의 일반원칙을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 및 계획, 프로그램, 서비스에 적용하라.
c) 협약의 일반원칙을 계획과 정책 결정의 매 단계에서 또한 사회·보건복지·교육 기관, 법원, 행정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에 적용하라.

비차별

31.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고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 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의 아동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에 우려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대한민국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32. 위원회는 협약 2조에 포함된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3. 위원회는 2001년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후속 보를 다음번 정기보고서에 포함할 것과 협약 29조 1항(교육의 목표) 관련 위원회의 일반논평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35 위와회는 협약 12조에 따라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재개정하라. 그리고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 기관의 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 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4.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37(a) 조)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성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구속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글로벌이고 비폭력적인 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폐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정계 형태를 조성하라.

5.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협약 5, 18(1-2항), 9-11, 19-21, 25, 27(4항), 39조)

대안 양육

40. 위원회는 가정과 분리된 아동의 시설양육에 대한 대안으로 그룹홈을 설립한 데 주목한다. 그러나, 그룹홈의 설립과 대안 양육 체계의 개발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 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41.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그룹홈과 대안양육체계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카운슬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 b)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건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 c) 대안양육상태와 취약한 가정속의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의 숫자를 늘리고 그들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라

입양

42. 위원회는 보편적인 부정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허가나 자격 있는 기관에 의하지 않고 이뤄질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이 아동최상의 이익 또는 (적절한 경우)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높은 숫자의 해외입양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96년 1차 권고에서 언급했던 우려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차 권고를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협약 21조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법률을 개혁할 목적으로 국내 및 해외입양 체계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라.
 - b) 해외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라

아동학대와 방임

44. 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원조를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센타가 여러지역에서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쿠고한다

- ④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법률 개혁을 포함하여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기소가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돼야하며, 법집행공무원과 사회사업가 및 검사들에게 이점에 관한 훈련을 하라.
- b)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국적인 대응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타 설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 c)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성별 및 연령대로 분산돼 있는 학대 및 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라.

아동부양

46. 위원회는 법적으로 받아야만 할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주로 어머니)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한다.

47. 협약 27조와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3조)에 입각하여, 법원의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6. 기본적 보건과 복지

(협약 6, 18조 3항, 23, 24, 26, 27조 1-3항)

48.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건 지표에 고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건예산 할당이 1%미만이며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모유수유율이 90년대에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과 청소년의 흡연의 증가와 각성제 및 여타의 불법약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49.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
- b) 영아에게 처음 6개월간의 완전한 모유수유가 주는 유익성에 대해 어머니를 교육하고 모유수유를 장려하라. 모유수유에 대한 국가규범을 채택하라.
- c)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d) 에이즈 및 여타의 성병에 대한 교육,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청소년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보건 연구에 착수하라.

장애아동

50.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며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장애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고 있으며, 많은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없고,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다는 보고에 우려한다.

51. 위원회는 ‘199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장애아동에 관한 토론의 날’에서 도출된 권고와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유엔통회 결의안 48/96)에 따라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학부모, 아동, 교사 및 일반대중을 겨냥하여 인식 향상과 교육 운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b)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라. 이 조사는 교육 및 여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교육 욕구 및 접근에 대해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 c) 학교, 여가시설을 포함하여 공공 건물과 공공 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물리적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확대하라.

7. 교육

(협약 28, 29, 31조)

52. 위원회는 정부가 중등교육을 무상화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정보를 환영하지만, 대한민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한다.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에서는 여아와 남아의 입학비율에 차이가 없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남아보다 여아의 수가 적어지는 점을 우려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5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립학교에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립학교의 질을 높여라.
- b)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 c) 여아의 입학을 증진하고 끈질긴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 d)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협약 29조 1항과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에서 언급된 교육의 목적을 반영할 목적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재고하라.

8. 특별 보호 조치

(협약 22, 38, 39, 40, 37 (b)-(d), 32-36조)

성적 착취

54. 위원회는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산 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2000년 청소년보호법을 만든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 성착취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원조교제” 현상에 대해 우려한

다.

55.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라. 이 계획에는 1996년과 2001년 '제 1·2차 상업적 아동 성착취 철폐 세계 대회'에서 합의됐듯이 효과적인 자료 수집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 b)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모니터·조사·기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집행공무원, 사회사업가 및 검사를 훈련하라.
- c)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라.
- d) 연소자에 대한 성학대 및 착취에 관련된 법률 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등 예방적 조치를 개발하라.

소년사법

56. 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적 지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57.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 a) 특히 협약 37, 40, 39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아이드라인(리야드(Riyadh) 가이드라인), 199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토론의 견지에서, 소년사법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라.
- b) 자유의 박탈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 그리고 자유의 박탈로 귀결될 수 있는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청소년에게 조기에 변호인을 보장하라.
- c) 연소자를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검사선의주의)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

이주노동자의 자녀

58. 위원회는 교육 및 사회보장관련 법과 규칙이 외국인 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복지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9.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정

60.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61. 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10. 문서의 배포

62. 협약 44조 6항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서면답변을 광범위한 대중, 특히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 기록과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포함하여 보고서 출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 국회, 일반 대중 및 민간단체 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과 토론을 넓고 협약의 이행과 모니터링 전작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서는 광범위하게 배포돼야만 한다.

11. 차기 보고서

63. 위원회가 채택한 정기보고서에 대한 권고와 29차 회기(CRC/C/114)의 보고서에서 기술한 권고에 입각하여, 위원회는 협약 44조에 충분히 부응하는 국가 보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에서 나타난 진전을 점검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협약 당사국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맞춰 제출되는 정부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위원회는, 예외적인 조치로, 한국정부가 협약에 부응하는 보고 의무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돋기 위하여, 한국의 3차와 4차 보고서를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서 4차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있는 2008년 12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원래 3차 보고서가 2003년에 제출돼야 하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 제출이 늦었고 위원회의 심사회의도 지연된 관계로 2차 보고서를 2003년에야 심의하게 되었다. 이에 3차 보고서 심사를 건너뛰게 된 것이다; 역자주) 위원회는 협약이 정한대로 한국정부가 매 5년마다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UNEDITED VERSION

CRC/C/15/Add.197
January 200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2nd session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70/Add.14), submitted on 1 May 2000, at its 838th and 839th meetings (see CRC/C/SR.838-839), held on 15 January 2003, and adopted at the 862nd meeting, held on 31 January 2003,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A.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as well as the detailed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Q/REP/KO/2), which g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State party. It further notes with appreciation the high level delegation drawn from several sectors sent by the State party and welcomes the positive reactions to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scussion.

**B. Follow-up measures under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legislation enacted to implement furth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the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n 1997, which addresses investigation and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the Juvenile Protection Act, in 2000, to criminalize persons involved i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from those under 19.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2001.

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138 and 182 in 1999 and 2001 respectively, and its raising of the minimum age of employment to 15 years of age, as was previously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C. Factors and difficulties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6. The Committee acknowledges that due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ensuing IMF structural adjustment reform programme, the State party has faced economic and financial constraints which has affected its ability to imple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also notes that the strict austerity measures have allowed the State party to repay its international loans in a timely manner and that the economy has largely recovered.

D. Principal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

**1.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s. 4, 42 and 44,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7. The Committee regrets that most recommendations not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CRC/C/15/Add.51 of 13 February 1996), adopted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CRC/C/8/Add.21), have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 a)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para. 19);
- b)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girl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of-wedlock (para. 20);
- c) measures to promot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family, school and social life (para. 26);
- d) the prohibition of all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para. 22);
- e) a review of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flecting fully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para. 29).

8. The Committee reiterates those concern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make sustained efforts to address thos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and to address the list of concer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cond periodic report.

Reservations

9. The Committee remains very concerned at the State party's reservations to articles 9(3), 21(a) and 40(2)(b)(v).

10. The Committee, noting that juveniles sentenc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have the right to appeal,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40(2)(b)(v).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ivil Act so that both children and par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change public attitudes on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o articles 21(a) and 9(3),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Legislation

11. The Committee, while taking note of amendments to domestic legislation, nevertheless remains concerned that domestic laws do not yet fully comply with the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conforms fully to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oordination

13.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National Plan of Action on Children was included in the eighth Five-Yea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1998-2002. However, it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a permanent central mechanism that is fully empowered to coordinate all policies and programs for children run by different ministries and levels of Government.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oaden the scop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Child Rearing, formulated in 2001, to includ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ments made at the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May 2002) and outlined in "A World Fit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signate one permanent and central mechanism to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and ensure that it has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Monitoring by public authorities

15.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elegation that the State party is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body within the Government to monitor it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ly monitor its activiti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dependent Monitoring

17. The Committee welcomes, as noted, in paragraph 5,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 Commission has no specialization in children's rights.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 Ensur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hild rights expert amongst the Commissioners, or alternatively, that the Commission establish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 b) Ensur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accessible to children, in particular by raising awareness of its power to receive, investigate and address complaints by children in a child-sensitive manner.

Allocation of resources

19.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allocations for children from the central budge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health and education, have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1997 despite economic recovery in the last two years. Current levels of spending are insufficient to respond to national and local priori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and are not commensurate with budgetary allocations of other States at a simila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y:**
 - a) prioritizing budgetary allocation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to the maximum extent of... available resources"; and,
 - b) identifying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the State budget spent on children in the public, private and NGO sec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and effect of the expenditures and also, in view of the costs, the accessibility, and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different sectors.

Data collection

21. The Committee joins the State party in its concern expressed in its written replies that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mechanism does not cover all children under 18 in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notes the plan to develop a child rights index.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specifically for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nd use these data and indicators for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mplete the**

work on the child rights' index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23. While not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party and civil society in delivering services to children,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re is a lack of necessary standard-setting, and that cooperation with civil society at the policy-making level or in the reporting process has been limited.
24.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civil society as a partner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vol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a more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licy formulation,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and in the drafting of future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2002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ole of private service providers in implementing child rights (CRC/C/121) and improve its supervision of private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by, inter alia, improving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service providers.

Dissemination

25.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children and the public at large, as well as all groups of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aware of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based approach enshrined therein.
26. While noting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to articles 42 and 44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its own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children's rights aimed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ally at children;
 - b) carry ou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parliamentarian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municipal worker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2. Definition of the child (article 1 of the Convention)

27.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the difference in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16) and boys (18).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rai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to that of boys.

3. General principles (arts. 2, 3, 6 and 12 of the Convention)

29.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general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art. 2 of the Convention), the right to have her/his best interest as a primary consideration (art. 3),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 6) and the right to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ccording to age and maturity (art. 12) a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policies and program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ppropriately integrat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amely articles 2, 3, 6 and 12, in all relevant legislation concerning children;
 - b) Apply them in all politic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in projects, programmes and services which have an impact on all children; and
 - c) Apply these principles in planning and policy-making at every level, as well as in actions taken by social and health welf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urts of law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n-discrimination

31.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absence of information in State party's report regard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act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of-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girls and migrant famil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language,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ethnic origin,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as stated in the Convention.
3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legislation explicit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clude all grounds includ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necessary proactive measures to combat societ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of-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girls, through inter alia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
33.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pecific information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measur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ollow up on the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2001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nd taking account of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29(1) of the Convention (aims of education).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3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raditional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society still limit the respect for their views, within the family, schools, other institutions and society at large.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0,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o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mote and facilita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their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dministrative bodies,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participate;
 -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on children themselves.

4.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s. 7, 8, 13-17 and 37(a) of th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3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imitations on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ue to strict administrative control of student councils and school regulations that limit or prohibit outside political activities of studen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t is further concerned about allegations that Internet chat rooms set up independently by teenagers have been closed down by authorities for arbitrary reasons.
37. In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 party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Corporal punishment

38. The Committee notes with great concern that corporal punishment is officially permitted in schools. The Committee is of the opinion that corporal punishment does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particularly since it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the dignity of the child. [See similar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1/Add.79, para 36]. The fact that Ministry of Education guidelines leave the decision on whether to use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to the individual school administrators suggests that some forms of corporal punishment are acceptable and therefore undermines educational measures to promote positive and non-violent discipline.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amend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5.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rts.5; 18 (paras.1-2); 9-11; 19-21; 25; 27 (para.4); and 39 of the Convention)

Alternative care

40. The Committee notes the State party's establishment of group homes as an alternativ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group hom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foster care system remains limited, and that private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are not subject to governmental regulations or regular inspections.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group homes and the foster care system, in particular by providing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ing the counselling and support mechanisms for foster families;
- Ensur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them into a family environment;
-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assistance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vulnerable families.

Adoption

42.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due to prevailing negative cultural traditions, domestic adoptions may be arranged without authorization or involvement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such arrangements do no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r, where appropriate, the views of the child.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e high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suggesting that this form of adoption is not necessarily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it reiterates its concern stated in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that the State party has not ratified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 21;
 - the ratification of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hild abuse and neglect

4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many regions of the country that deal with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provide counselling and assistance to victims.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re is no nationwide system to receive and effectively address complaints on child abuse and neglect, or provide assistance to victims.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 c) Establish a mechanism to collect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properly assess the extent of these problem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mes to address these concerns.

Child maintenance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high number of divorced and single parents, primarily mothers, who do not receive the child maintenance payments to which they are legally entitled.

47. In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er/his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by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with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6. Basic health and welfare (arts. 6; 18, para. 3; 23; 24; 26; 27, paras 1-3 of the Convention)

48. The Committee is encouraged by the high level of health indicators of children. Nevertheless, it is concerned that the quota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to health is under 1 per cent, and that 90 per cent of all health care facilities are privately operated.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proportion of mothers breastfeeding their children has declined

significantly during the 1990s, and that the number of adolescents smoking and using amphetamines and other illicit substances is increasing.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 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feeding for an infant's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feeding;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feed their children;
-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50. The Committee is extremely concerned that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is widespread and prevents these children from enjoying their right to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abandoned each year, that many cannot attend school and when they do attend school they are segregated from other students.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Committee's 1997 discussion day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 a)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aimed at parents, children,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 b)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currently not attending school, and which assesses their educational needs and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 c) Expand existing programme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ublic buildings and areas, including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at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7. Education (arts. 28, 29 and 31 of the Convention)

52.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despite the State party's relatively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only primary education is free, yet it welcomes the information that the State party is in the process of making middle school education free. Similarly, while there is no disparity in enrollment rates of girls and boys in primary education, significantly fewer girls than boys attend higher education. Finally,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 that the highly competitive nature of the education system risks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to his or her fullest potential.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Rais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s, which is low compared to private schools, by increasing material resources provided to schoo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 b) Develop a time-bound strategy for reducing and eliminating the cost of pre-school and secondary education;
-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higher education is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promoting the enrollment of girls and addressing persistent gender stereotypes;
- d) Review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and reflecting the aims of education mentioned in art. 29(1)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the Aims of Education.

8.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s. 22, 38, 39, 40, 37 (b)-(d), 32-36 of the Convention)

Sexual exploitation

54. The Committee welcomes the enactment in 2000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hich aims to penalize those purchasing sexual services from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is law is not being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there is limited data available on the prevalence of child sexual exploitation. It is also concerned at reports of the widespread phenomenon of "Wonjokyuje" in which adolescent girls engage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older men for money.

5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includes measures for effective data collection, as agre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1996 and 2001 respectively;
- b) Train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on how to receive, monitor, investigate and prosecute complaints, in a child-sensitive manner;
- c) Ensure that all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have access to appropriate recovery and reintegration programmes and services
- d) Develop preventive measures that target those soliciting and providing sexual services, such as materials on relevant legislation on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minors and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programs in schools on healthy lifestyles.

Juvenile justice

5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juveniles accused of violating the law and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may be deprived of their liberty without undergoing criminal procedures and having access to legal assistance.

5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juvenile justice standards and in particular articles 37, 40 and 39 of the Convention, as well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nd in the light of the Committee's 1995 discussion day o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nd carry out specialized training for personn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b) use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last resort and ensure that all juveniles involved in protection dispositions that may result in deprivation of liberty have access to legal counsel at an early stage;
- c) amend legis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in deciding whether a minor i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or protective disposition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58.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laws and regulations do not include specific provisions providing for the welfare and rights of foreign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5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 a) amend domestic laws, in particular those 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o include specific provisions which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for all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b) consider ratifying the 199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mendment to article 43 (2) of the Convention

60.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 has signed but not ratified the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6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0. Dissemination of documents

62. In light of article 44, paragraph 6,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econd periodic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and children in particular, and that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relevant summary records and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Such a document should be widely distributed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within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concer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11. Next report

63. In light of the recommendation on reporting periodicity adopted by the Committee and described in the report on its twenty-ninth session (CRC/C/114), the Committee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a reporting practice tha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 important aspect of States parties' responsibilities to children under the Convention is ensuring that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regular opportunities to examine the progress made in the Convention's implementation. In this regard, regular and timely reporting by States parties is crucial. As an exceptional measure, in order to help the State party catch up with its reporting obligation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third and fourth reports in one consolidated report by 19 December 2008, the due date for the submission of the fourth report. The Committee expects the State party to report thereafter every five years, as foreseen by the Convention.

,

<인권하루소식> 2002년 6월 19일자(제2119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조약 2차 보고서 제출

지난 14일 어린이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조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후 매 5년마다 아동권리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 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民間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진전을 위한 정부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며, 유엔은 그러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2차 민간단체 보고서는 96년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했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선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초보건과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실태보고와 민간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네바에서 아동권 조약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민간단체의 로라 버그만 씨는 이번 민간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오는 10월 9일에 한국에 관한 회기 전 실무분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가 초청되며, 위원회가 2003년 1월 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사항을 도출할 목적으로 열린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10월 11일자(제2192호)

정부는 아동권 위해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쳤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

고 있는 제네바, 9일 오후에는(제네바 현재 시각) 한국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가 열렸다.

지난 2000년 5월,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민간단체와 유엔전문기구로부터 추가정보를 구하고 주요 문제점을 추리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다.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민간단체가 이 회의에 초청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회의의 논의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주요 문제점을 추리고, 그것을 한국정부에 보낸다. 정부는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정부보고서 심사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민간단체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해원(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는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의 1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미 7년 전에 대부분 언급됐던 것들이며,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의 아동들을 이번에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말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민간보고서가 분명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정부가 유보조항의 철회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권리협약 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은 9조 3항 부모의 이혼 등 부모의 일방 혹은 쌍방과 아동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자녀는 정기적으로 부모의 면접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1조 가항 입양은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한국은 신고제), 40조 2항 나호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아동의 모든 권리.

아동체벌, 입시교육의 폐해, 차별적인 호주제, 정부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EIS(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표시했다. 위원들은 호주제에 대하여 성차별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날의 토론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에 지기하는 질문을 다음주에 발표하며, 한국정부의 2차보고서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7년 전과 똑같은 요식 행위로 이번 심사를 받을지, 아동권리의 신장을 위한 계기로 삼을지가 주목된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11월 12일자(제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 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질문목록(list of issues)을 뽑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위원회의 한국 정부보고서 심사회에 임해야 한다.

질문목록에서 첫째로, 위원회는 구체적인 통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교육·보건·사회보장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소년사법 등에 소요된 예산, 장애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 청소년노동관련 등이다. 이는 한국정부 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기에 인색했던데 기인하는 것

둘째로, 위원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질문한다. 1차 보고서 심사 후 있고,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96년 1차 보고서 심사 회의 당시 한국 정부가 철회의사를 밝혔으나 여태까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밖에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자료 수집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부가 발간한 아동권리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의 대중적 홍보와 교육에 기울인 노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동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안, 기구, 정책,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한다. 이 역시 1차 보고서 심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뜻이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서면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라는 주요 문제들은 여아·장애아동·혼외출생아동·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차별, 가족·사회·학교에서의 아동의 참여, 아동이 이용·접근 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이른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날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가 취할 아동권 정책의 방향을 드러낼 것이란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인권하루소식> 2002년 12월 25일자(제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이번에는 준비된 문건만 읽고 끝내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전 과정과 결과물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차 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준비를 위한 정부·민간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측에 대한 요구와 당부를 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경청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이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국 정부 보고서 심사는 지난 96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민간단체들은 96년 1차 보고서 심사 때를 돌아보며 크게 몇 가지를 지적했다. 준비된 문건만 읽을 작정으로 회의에 임했던 정부대표단의 성의부족,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식의 왜곡·거짓 보고, 국민에게 보고서 제출과정과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이번 2차 보고서 심사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생산적인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토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성실한 준비는 필수이다. 또한 인권문제란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므로, 솔직하게 인정할 문제는 인정하는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어선 지금 취해야 할 성숙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이경아 외무관은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도 격려에 집중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소외된 아동에 보다 관심을

이어 민간단체들은 복지, 교육, 장애 등 개별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송경아

부장은 소외된 아동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결식아동 문제는 '밥'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대도시를 벗어나면 폐교로 인해 아이들이 점점 더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은 곤란을 겪는 점, 아동학대방지사업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도별 한군데 센터만으로는 아동의 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협약에서는 가정환경상실아동에 대한 보호의 우선순위를 가정위탁 다음에 입양 그리고 적절한 육아시설로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환경상실 아동이 시설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홍의표 인권교육국장은 "1·2차 보고서에서 누누이 지적되었지만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기본적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학교를 포함한 기존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중호 사무관은 "각 부처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교육부와 협력된 권리를 알리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인에게 존엄성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속에서 장애아동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쪽 자료는 법과 정책에 대한 형식적 나열이며 통계자료도 불충분하다. 장애아동 인구파악,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실태조사가 있어야 분명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시설 밀려서 이뤄지며, 6백여개에 달하는 미인가시설의 상태는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심사회의는 다가오는데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99%를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1%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 집중하 고 그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보다는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겸허하게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들의 권고와 어긋나는 정책을 펼쳐온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민만기 검사는 "아동권리협약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며 "소년사법문제도 보호과가 아니면 잘 모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네바회의 참석 전에 바빠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너무 '솔직'한 발언을 해서 민간단체 참석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6개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민간단체보고서를 준비했던 13개 민간 단체 중에서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

다. 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사회의는 2003년 1월 15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고, 정부대표단은 10여명 규모로 구성 중에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3년 1월 18일자(제2258호)

잊혀진 아동권, 궁색한 대안 유엔 아동권 2차 보고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장 에그버트 뢉, 아래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현지시각으로 15일, 8시간에 걸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를 심사하는 회의가 열렸다.

한국정부대표단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 교육부, 노동부 등 각 부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관련 심사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94년에 1차 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보고서를 심사한 후 20여 개 항목의 권고를 했고, 이번 심사회의는 지난 7년 동안 이루어진 아동권의 진전사항과 유엔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잊혀진 권리

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은 '유보조항 철회여부, 체벌금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점검과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적이고 다각적인 체계의 마련' 등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사항의 이행여부에 집중됐다.

이에 대한 정부대표단의 답변은 여전히 "시기상조다", "고려 중"이라는 데서 진전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협약 비준시 유보했던 조항에 대한 철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협약에서 3개 조항을 유보했는데 그중 하나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내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이는 1차 심사 때도 했던 답변으로 7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려 중"이라는 것은 2차 보고서 심사를 받기까지 '잊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또한 1차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는 거짓보고가 들어있었다. "그 위원회가 왜 2차 보고서에서는 사라졌나"는 추궁에 정부 대표단은 "1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위원회였을 뿐인데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어서 아동권리 이행사항을 점검·조정하는 상설기구인 것처럼 보인 것 같다"는 궁색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아동권리의 이행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정부 체계는 없으며, 이를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었다. 체벌금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담당인 시타렐라 위원은 "한국 정부가 1차 보고서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며 "1차 때 했던 위원회의 권고를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

토론 과정 전반에서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가 대안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아동 참여의 권리,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의 체벌금지, 반차별 캠페인, 경찰과 법원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라는 질문에 담긴 문제의식을 정부 대표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아동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보기에 제기되는 질문에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의아해 하며 '한국의 현행법과 제도는 이렇다'는식의 단편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토론이 진전될 수 없었다. 또한 대안에 있어서도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에 대한 기대

위원회들은 2001년에 신설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의 위원 중에 아동권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느냐"며 위원 인선과정에 관심을 보였고, 아동의 진정이 얼마나 접수됐으며,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의 신설이 가능한지, 국가인권위가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을 보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

솔직하고 열린 자세 돋보여

이번 정부대표단의 태도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태도를 벗어나 잘못이나 부족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대안을 구하는 태도는 심사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열린 자세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대표단의 책임자인 문경태 실장은 회의 직후 시타렐라 위원에게 "1년 후에 한국에 초청하겠다. 협약의 이행 사항 여부를 와서 점검해 달라"고 했고, 이에 시타렐라 위원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대표단은 민간단체와 평가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아동권의 이행이 3차 보고서 제출 때까지 또다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대표단의 이런 약속부터 이행돼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보고서 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1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 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다.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96년 1차보고서 심사 후 7년 간의 아동권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밝힌 주요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아동권에 대한 막강의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토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이행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요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

△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책임을 지는 상설적인 중앙기구를 구성하고, 필수적인 권한과 충분한 재정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아동권 전문가를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하면서,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단체와 좀더 체계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불충분한 것에 주목하면서, 아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캠페인과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인종적 출신,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그룹홈과 대안적 양육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또 모든 사적·공적 양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ENEVA

△ 아동학대와 방임관련 진정을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는 동시에 저소득 가정이 무료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의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함께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과 공공영역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만이 무상인 점을 우려하면서, 취학 전 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무료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상업적 목적의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 것은 물론, 모든 성학대와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서비스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적법절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처분과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아동을 형사절차에 회부할 것인지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의 자유재량을 없애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관련문서를 널리 배포하고 전체 대중뿐 아니라 아동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GV/004/2003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Genev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as the honour to inform the latter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represented at the meetings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15 January at the thirty-second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ld in Geneva, from 13 to 31 January 2003, by the following delegation:

Head of Delegation:

H.E. Mr. Eui-yong CHUNG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ternate:

Mr. Kyung-tae MOON
Deputy Minister for Planning and Managem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Representatives:

Mr. Youn-soo LEE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s. So-young ANN
Director for Family and Welfare Division
MOHW

OHCHR REGISTRY

14 JAN 2003

Recipients : K. Hemovich

Mr. Kang-il HU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r. Sung-ki YI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r. Man-kee M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Ms. Kyung-ah LEE
Assistant Director,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r. Hak-gi KIM
Deputy Director, Family and Welfare Division
MOHW

Mr. Byeong-gap CHOI
Senior Education Researcher, Curriculum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r. Sang-won JUNG
Deputy Director, Youth Support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r. Joong-ho LEE
Deputy Director, Equal Employment Bureau
Ministry of Labor

Mr. Eui-su HWANG
Assistant Director,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Mr. Kyo-sun PARK
Education Researcher, School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dvi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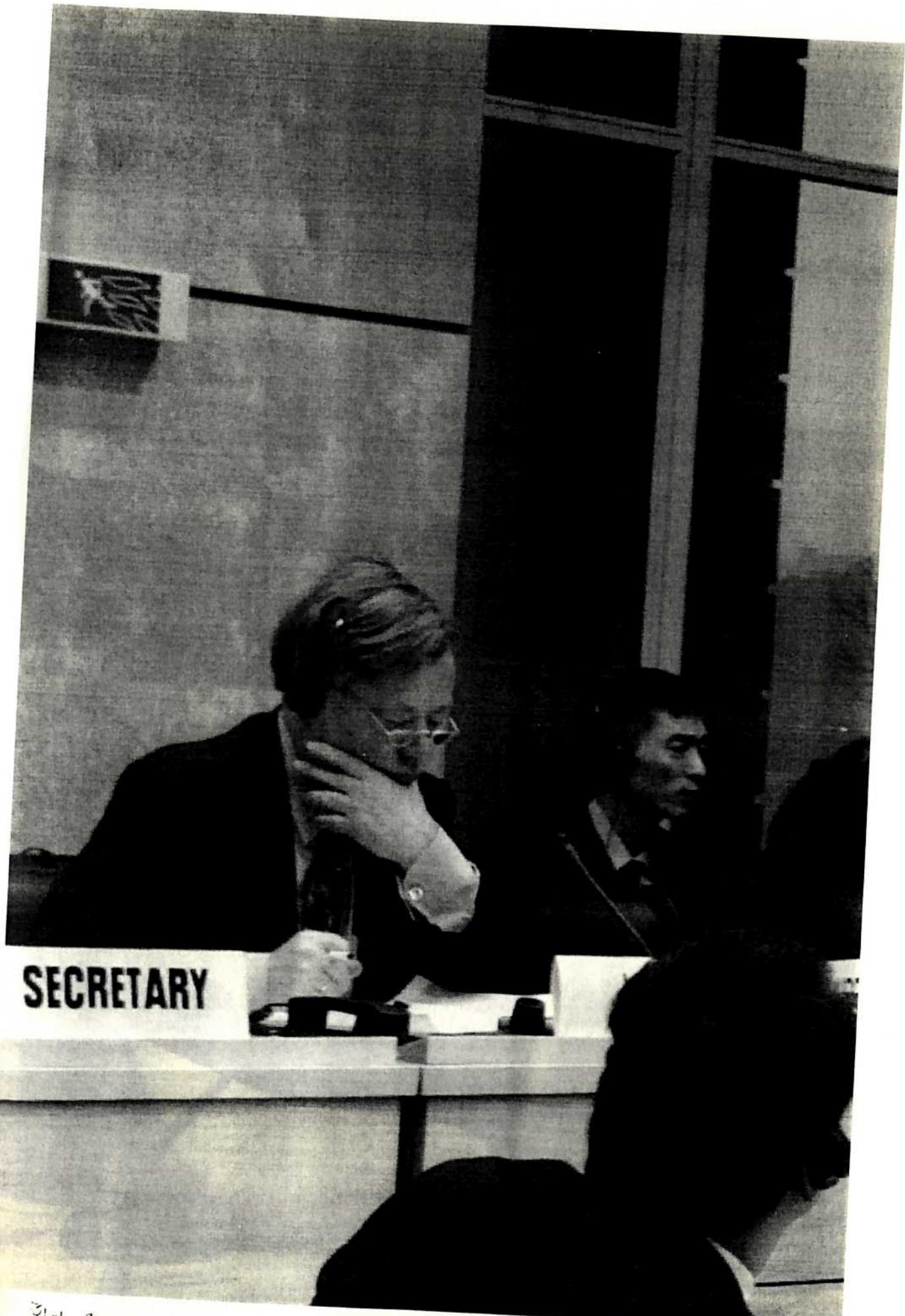
Ms. Moon-hee SUH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r. Yu-ku KANG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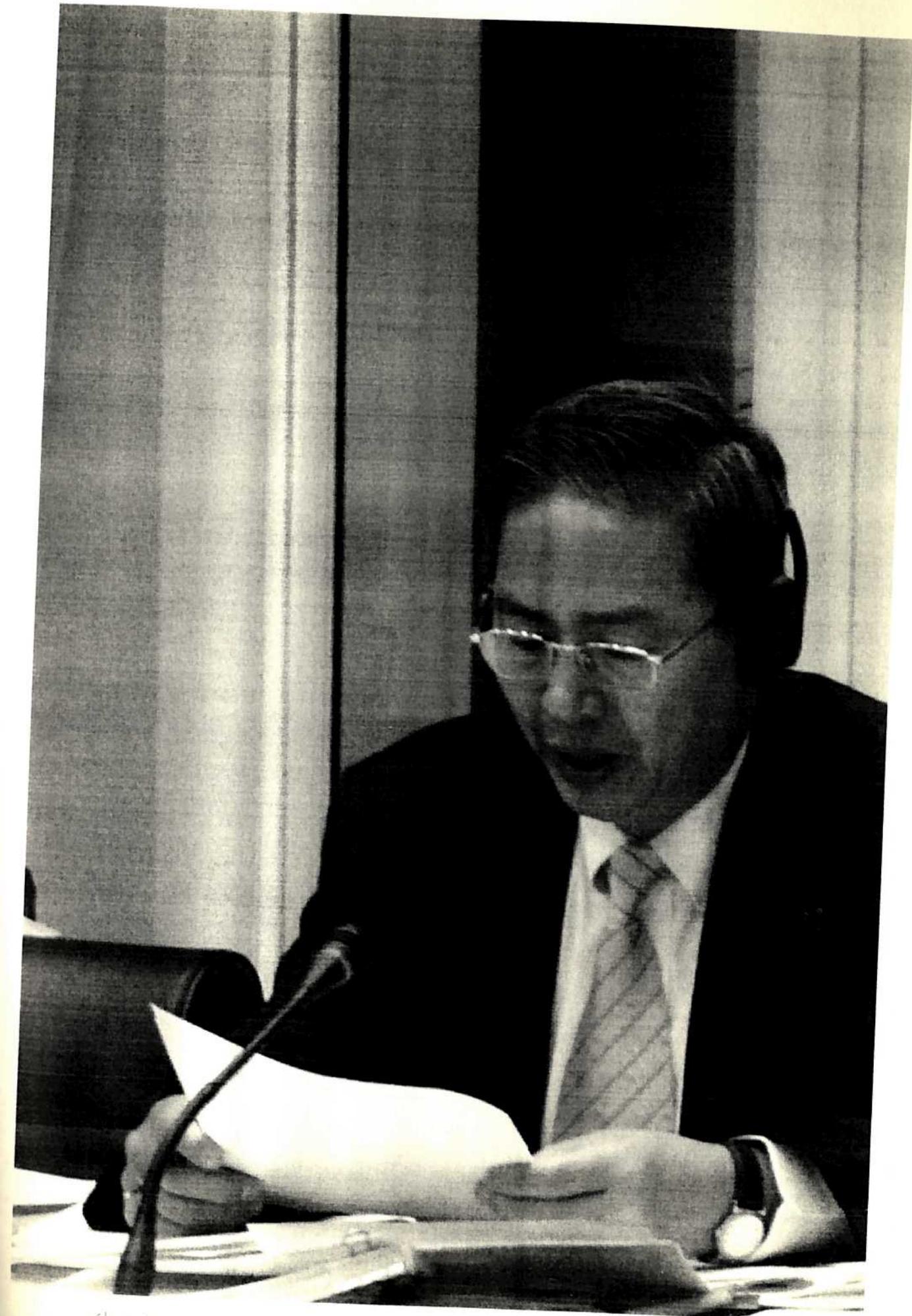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Office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Genev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Geneva, 10 January 2003

UNHCHR
Palais Wilson
52 Rue des Pâquis
1201 Geneva



한국 대표부
Mr. Taek Expert Deck 322
2003. 1. 15. 7:00 AM
TUE 2003. 1. 15. 7:00 AM



18012
김연-조연
을 열 때 브리노지의
신경
1985. 1. 15.